

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5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3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제사항이 타법(건축법, 산림법, 하천법등)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므로 폐지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자연발생유원지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제사항중 타법과 중복 규제 하고 있는 아래사항에 대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함
 - 부지의 사용, 공작물의 설치등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 - 사용허가에 따른 허가 취소(안 제7조)
 - 허가사항에 대한 권리양도의 제한(안 제8조)
 - 전염병 질환자, 수수료납부 거부자 등의 입장거절 및 퇴장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
※ 관련법규

- 하천내 공작물 설치허가 : 하천법제25조
- 건축허가 : 건축법제8조
- 산림훼손 : 산림법제90조, 제118조
- 국·공유재산 사용허가 : 국유재산법제24조, 지방재정법제82조

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내지 제8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 내지 제11조를

제6조 내지 제8조로 하며 제13조 내지 제 16조를 제9조내지 제12조로
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징 안
<u>제6조 (사용허가) ①자연발생유원지</u> <u>에서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</u> <u>하는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 <u>다만,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에는</u> <u>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 <u>1. 부지의 사용</u> <u>2. 공작물의 설치 및 변경</u> <u>3. 물품판매등 상행위</u> <u>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</u> <u>행위</u> <u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간은</u> <u>1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</u> <u>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</u> <u>또는 단축할 수 있다.</u> <u>③시장이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</u> <u>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를</u> <u>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 <u>④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하</u> <u>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</u> <u>의거 사용개시일로부터 30일전에</u> <u>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u> <u>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</u> <u>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</u> <u>서를 교부한다.</u>	(삭 제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제7조 (허가취소등) 시장은 제6조의</u> <u>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자가</u> <u>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</u> <u>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</u> <u>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1.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</u> <u>받은 때</u> <u>2.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</u> <u>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</u> <u>3.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사업의</u> <u>착수 또는 경영을 하지 아니한 때</u> <u>4.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</u> <u>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</u> <u>5. 부당한 요금을 받는등 상거래질서</u> <u>행위를 문란케한 때</u> <u>6.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저해</u> <u>하는 행위를 한 때</u>		(삭 제)		
<u>제8조 (권리양도의 제한등) 제6조의</u> <u>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는</u> <u>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관리를 타인</u> <u>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</u> <u>된다.</u>		(삭 제)		
<u>제9조 (수수료) (생 략)</u>		제6조 (수수료) (현행과 같음)	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제10조 (수수료의 징수) (생략)</u>	<u>제7조 (수수료의 징수) (현행과같음)</u>
<u>제11조 (수수료의 면제) (생략)</u>	<u>제8조 (수수료의 면제) (현행과같음)</u>
<u>제12조 (입장거절 및 퇴장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</u> 1. 전염병 질환자 2.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는 자 3.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4. 자연환경 오손 또는 시설을 훼손하는 자 5. 기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	(삭제)
<u>제13조 (수수료의 환불) (생략)</u>	<u>제9조 (수수료의 환불)</u> (현행 제13조와 같음)
<u>제14조 (수수료의 사용) (생략)</u>	<u>제10조 (수수료의 사용)</u> (현행 제14조와 같음)
<u>제15조 (준용) (생략)</u>	<u>제11조 (준용)</u> (현행 제15조와 같음)
<u>제16조 (시행규칙) (생략)</u>	<u>제12조 (시행규칙)</u> (현행 제16조와 같음)